

서울특별시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57
------------	------

2016. 12. 2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12.2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가. 제안이유

### ○ 수립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 ○ 수립배경

- 2011년 수립된 제2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대하여 그간 변화된 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2016년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 목 적

- 사람 중심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으로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정의 : 도시디자인 조례 제2조

- 도시공간의 보전·개선 위해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시설물의 배치·형태·윤곽·색채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

### ○ 대상 : 도시디자인 조례 별표

- 사회기반시설 : 도로시설물, 도시철도시설, 하천시설물 등
- 기타 시설물 : 가로녹지시설, 교통관련시설, 도로점용허가시설 등

### ○ 추진방향

- 디자인사업 위주에서 디자인 관리 절차의 개선
- 성과중심에서 생활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주체의 기준 명확화
-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및 공공의 전문성 강화

### ○ 중점 추진내용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도시디자인 개념 정립: 국내외 도시디자인 정의 및 정책 조사
  - 도시디자인 매뉴얼 사례 분석 : 국외 도시디자인 매뉴얼 사례 분석, 선진도시 트렌드 분석
  - 도시 정체성 연구 : 서울시 도시 정체성 관련 논문, 연구 보고서 검토 (서울시 길의 장소성, 도시형성 변천과정 등)
  - 관련법 및 상위정책 :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법, 경관법, 건축기본법 등
  - 서울시 관련 계획 및 정책 : 1,2차 기본계획 성과, 서울시 주요 업무 보고, 자치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분석

## - 비전과 목표

### • 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체계

계획의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서울 도시디자인 개념 및 범위		
	-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도시디자인의 정의 - 서울 도시디자인 계획의 범위		
여건변화 및 현황	관련 법 및 조례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도시디자인 현황 및 전망	방향성 도출
	- 서울 도시디자인 조례 분석 - 관련 법령간 위계 정립	- 서울 비전 2030 계획 분석 - 각 실국 마스터플랜 분석	- 국외 도시디자인 정책 추진 - 서울 디자인사업 문제점 분석	- 디자인 행정 체계 개선 - 시·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부재
비전 및 기본방향	서울 도시디자인 비전	서울 도시디자인 목표	도시디자인 10원칙	권역별 분야별 기본 방향
	- 3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비전 수립	-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 수립	- 도시디자인 기본10원칙 수립	
추진단계별 과제 제시	도시디자인 추진 5단계	우선과제 제시 (5항목)		
	- 추진단계별 과제 제시			
실행계획	단계별 추진 계획	시범사업 추진계획	실행체계 정립	
	- 연차별 추진 계획 수립	- 자치구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관리 및 추진 체계 구축	

### • 3차 서울 도시디자인 비전

비전	<p>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품질 향상 프로세스 개선</p> <p><b>“역사, 문화, 사람중심 서울, 도시디자인을 통한 구현”</b></p> <p>1~2차의 우수한 기본개념 및 거점계획등을 본 3차에서는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과정에 대한 연구 진행</p>		
전략	<p><b>함께(소통)하는 도시디자인을 통한 사람중심 도시</b></p>		
목표	<p><b>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도시디자인</b></p> <p>차량우선의 도시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변화 도모</p>	<p><b>역사문화의 개성있는 디자인도시</b></p> <p>한양도성, 건축자산의 지역 정체성을 보전하고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도시 추구</p>	<p><b>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디자인</b></p> <p>누구나 도시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도시공간 조성</p>
실행전략	<p>지역의 니즈의 사업화를 위한 체계 수립</p> <p>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대상지와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시행</p>	<p>협의 및 수행체계 정립을 통한 지속력 강화</p> <p>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협의, 자문 등 다양한 협의 체계의 시각화를 통해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사업 시행체계 자료 구축</p>	<p>지역자산을 활용한 사업 발굴로 정체성 강화</p> <p>지역의 유무형적 자산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조사 자료로 활용</p>

## • 단계별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전략			
	1	2	3	
<b>1. 도시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거리 조성</b>	도시와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는 "거리에 남는 거리조성"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는 서울시민의 특색있는 통일된 거리환경 조성	거리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한 디자인 방안 제공	거리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디자인계획
<b>2. 다양한 공공생활을 지원하는 외부공간 조성</b>	거리를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 커뮤니티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넓은 차선, 사용성이 낮은 거리를 사용 가능한 영역으로 활용	보행자의 오픈스페이스 사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보도설계	공유도시 설계를 통한 공유촉진 법령 제정
<b>3. 상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b>	상업활성화를 위한 보행로와의 연결성 강화,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상업지의 쇼핑객과 보행자들을 위한 주차공간 및 보도설계	적절한 보행자 교통을 유지한 기업의 상업활동 장려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b>4. 사용성을 중시하는 외부공간 조성</b>	사람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위한 서울시생활환경 조성	상대적으로 소음이 없고 시각공해가 없는 조용한거리 환경 조성	모든 사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거리환경 조성	보행자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차량의 속도저감을 유도하는 공공공간 계획
<b>5.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공공공간 구성</b>	보행자상해를 최소화하고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보행자의 활동을 돕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	포켓파크와 같은 커뮤니티 공간제공	공원과 연결된 레크리에이션 및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거리 개선
<b>6.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는 거리 조성</b>	보행자의 안전과 높은 수준의 보안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보행자의 편안한 보행과 횡단을 위한 거리환경 지원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제어장치 마련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 지원 프로그램 마련
<b>7. 공간적 맥락을 유지하고 이동 연결성 향상</b>	주요 목적지 사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성 향상	개방적인 거리환경 제공	교통거점과 거리의 연결성 강조한 네트워크 구축	공공시설물의 통일성 부여
<b>8. 공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강화</b>	녹색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시의 장기적 생태 기능 강화	빛물 투수가 유리하고 생태 공간이 유지되는 거리조성	한강 생태기능 복원을 통한 도시 내 자연환경 회복	에너지 소비비용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재료의 사용
<b>9.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 조성</b>	모든 인구(교통약자 포함)를 고려하여 목적지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	안전디자인 원칙에 따른 보행자를 위한 프로젝트	공공장소에서 보행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적제어장치 마련	지속적인 접근성 유지를 위한 도시의 건설기준 설정
<b>10. 다양한 외부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b>	서울시를 체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가로수 등 식재와 함께하는 거리제공	거리환경에서 시각적 혼란 최소화	보행자를 위한 수준높은 조명설계

### 다. 공청회 결과

○ 일 시 : 2016. 7. 22(금)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의견	검토의견	비고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8월 시행 예정으로 검토	○ 도시디자인 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법 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	반영
○ 시민만족감을 위한 25개 자치구 실행계획 수립	○ 자치구별 가이드라인 운영, 실행 계획 수립 방안을 위한 세부과제 보완	반영
○ 3차 계획의 주요 이슈를 상징화하는 슬로건 개발	○ 3차 계획의 비전을 슬로건 형식으로 보완	반영
○ 서울시, 산하기관 모두 활용가능한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 서울시 통합운용이 가능한 디자인 통합 관리 매뉴얼 개발을 위한 세부과제 보완	반영
○ 시민참여형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시민참여디자인 실행 매뉴얼 개발을 위한 세부과제 보완	반영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4.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 제출경위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이하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sup>1)</sup>이며, 지

1) 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7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됨.

- 이번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은 2006년 이후 세 번째로 수립되는 것으로, 2016년 8월 12일 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 주요내용 및 특징

- 이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은 서울시 전체 ‘도시디자인2)’의 개선·관리를 위해 수립되어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sup>3)</sup> 개최 후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재정립하였음.
-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은 내용적으로 현황분석, 비전 및 기본방향, 추진단계별 과제제시,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황분석에서는 서울시 도시변천사 및 관련계획·법 분석, 국외 선진 사례 분석, 1·2차 기본계획 분석 등을 토대로,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의 비전을 “역사, 문화, 사람중심 서울, 도시디자인을 통한 구현”으로 설정하고, “함께(소통)하는 도시디자인을 통한 사람중심

---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도시디자인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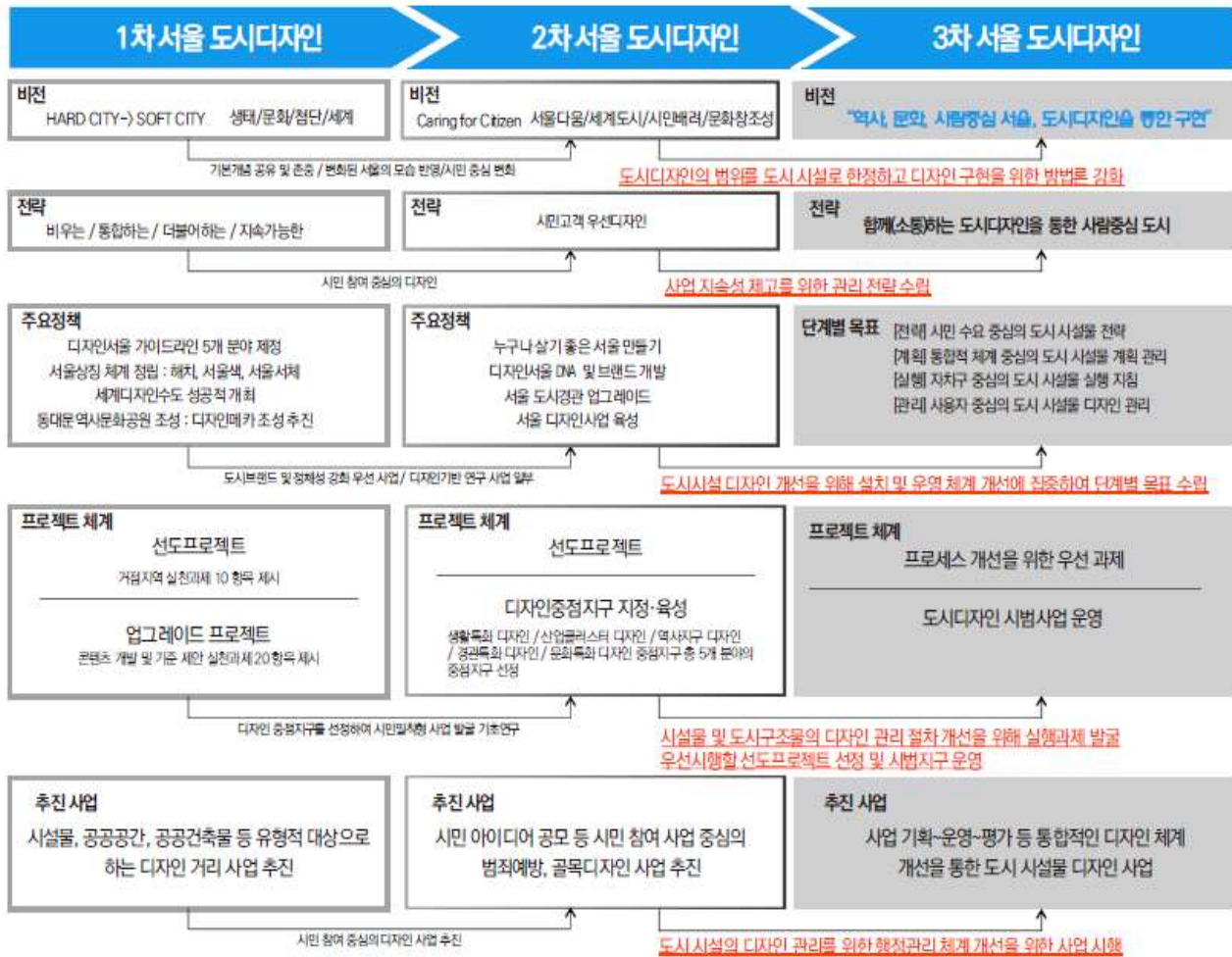
7.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물의 배치·형태·윤곽·색채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를 의미함(조례 제2조제1항).

3)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의무는 ‘16.3.24 조례 전부개정시 신규로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번 3차 기본계획부터 공청회를 개최하게 됨.



도시”를 전략으로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단계별 목표와 프로젝트 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 3차 기본계획은 앞선 1,2차 기본계획의 후속계획 차원으로 수립되었는데 기존 계획이 거시적이고 추상적·개념적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면, 3차 기본계획(안)은 개념과 비전부분에 있어 1,2차 계획내용을 연계·수용하면서 도시시설물 디자인 사업에 비중을 두었다는 특징을 지님.

□ 주요 검토사항

- 이 기본계획(안)은 조례 전부개정('16.3.24)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적정성, 관계법령

및 계획간의 연계성, 분야별 도시디자인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추진주체, 기본계획의 위상과 성격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가. 상위법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수립 필요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8월 4일 시행되었으며, “공공디자인”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조성·제작·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등에 대한 디자인 행위 및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제1호)
  - 또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제6조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지역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와 연계된 상위법령이 제정·시행된 것으로 파악됨<sup>4)</sup>.
- 서울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법령 제정 10년 전인 2006년 조례제정과 함께 수립·시행되어왔으나, 현재 상위법이 새롭게 제정·시행된 만큼 이에 근거한 계획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명칭 변경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흥계

---

4)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조례에 근거를 둔 디자인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계획의 대상 시설이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로서 유사하며, 계획내용 또한 비슷하기 때문임.



획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하거나, 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같은 위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다만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월 23일 입법예고 되고, 6월 24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3차 서울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시기와 입법절차가 중복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계획(안)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으며, 법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역시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나. 관련법령·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 앞서 검토한바와 같이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같은 위계를 갖추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에 앞서, 현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 또는 법령에 근거한 조례의 제정에 대한 병행검토와 그에 따른 대안 제시가 필요하겠음.
- 다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대상이 “도시시설물”에 관한 것으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신규 조례 제정보다는 기존 조례의 개정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논의 및 대안제시도 필요해 보임.
- 이 경우, 법에서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배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우수공공디자인 선정”에 관해서는 시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 등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현행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제3항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 및 도시디자인 관련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본계획에서는 경관계획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음.
- 이와 함께 건축기본계획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등 관련계획 및 조례와의 연계·시행방안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계획간 정합성 확보로 불필요한 행정력 소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음.

#### 다. 1·2차 디자인서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 이 기본계획에서는 1·2차 디자인서울 사업에 대한 비교 및 각 사업별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과거 사업명을 나열하는 수준<sup>5)</sup>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각 사업별 시행결과 및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사업의 특징과 관련부서간 협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도시디자인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음.

#### 라. 유형별·자치구별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방향 관련

- 이 기본계획에서는 2030 서울플랜 및 생활권계획 등을 고려한 권역별·유형별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권역별 도시디자인 사업 유형 및 우선순위의 지정과정 등에 대한 근거제시가 미약하고, 25개 자치구별 도시디자인사업에 대한

5) 제3차 서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 p.77~79

사업내용 및 시행방안을 보완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소요 예산 편성 및 운용계획 등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겠음<sup>6)</sup>.

#### 마.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단계별 과제제시

- 이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서울시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세부과제를 제시하면서, 디자인 사업의 유지·관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에 높은 비중을 둔 “행정 계획”으로서의 특성을 보임.
- 제4장 “추진단계별 과제제시<sup>7)</sup>”에서는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단계를 “[수요조사단계]→[기획단계]→[실행단계]→[관리단계]→[주민 참여단계]”의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목표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화된 수단이나 추진주체 등의 제시는 미흡하여 행정편의적 계획에 머무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음.
- 특히, 서울시 도시디자인 프로세스 향상을 위해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단계별로 “우선과제(5항목)”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 증대와 계획의 효과를 검증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행단계]의 경우 우선과제가 선정되지 않는 등 우선과제 선정목적이 불분명하므로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별로 촉매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단계별 우선과제를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붙임-2 참조).

6) 제3차 서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 p.104~121

7) 제3차 서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 p.125~139

- 도시디자인 사업은 각 지역별 일반 시민 및 사업자의 참여가 필수적  
이므로 누구나 이해하고 참여가능한 정책적 목표 및 추진방향, 비전  
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자치구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의 목적과 위상 그리고 성격에 대해 꾸준  
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동의(출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1357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수립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 나. 수립배경

- 2011년 수립된 2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대하여 그간 변화된 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2016년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다. 목적

- 사람 중심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으로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 2. 추진경위

- '06.07.19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시행
- '06.12. : 2006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 '11.12.08 : 2011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 '15.07.06 : 2016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착수보고, 중간보고(2회, 건축정책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 '16.07.22 : 공청회 개최

### 3. 주요내용

가. 정의 : 도시디자인 조례 제2조

- 도시공간의 보전·개선 위해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시설물의 배치·형태·윤곽·색채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

나. 대상 : 도시디자인 조례 별표

- 사회기반시설 : 도로시설물, 도시철도시설, 하천시설물 등
- 기타 시설물 : 가로녹지시설, 교통관련시설, 도로점용허가시설 등

나. 추진방향

- 디자인사업 위주에서 디자인 관리 절차의 개선
- 성과중심에서 생활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주체의 기준 명확화
-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및 공공의 전문성 강화

다. 중점 추진내용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도시디자인 개념 정립: 국내외 도시디자인 정의 및 정책 조사
  - 도시디자인 매뉴얼 사례 분석 : 국외 도시디자인 매뉴얼 사례 분석, 선진도시 트렌드 분석
  - 도시 정체성 연구 : 서울시 도시 정체성 관련 논문, 연구 보고서 검토 (서울시 길의 장소성, 도시형성 변천과정 등)
  - 관련법 및 상위정책 :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법, 경관법, 건축기본법 등
  - 서울시 관련 계획 및 정책 : 1,2차 기본계획 성과, 서울시 주요 업무보고, 자치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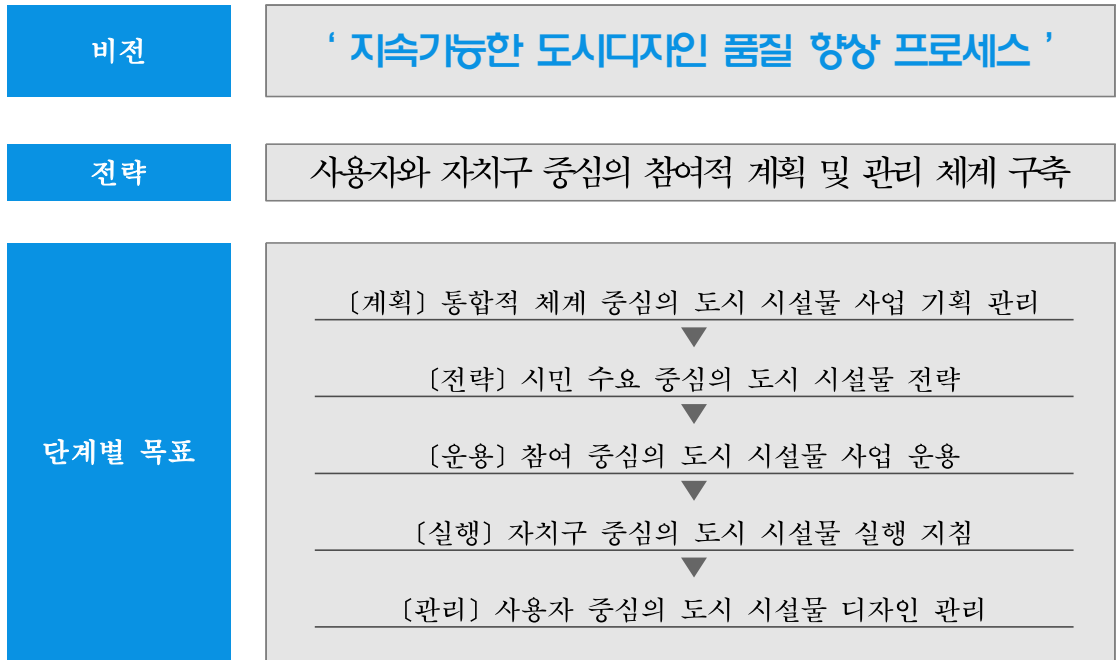
## ○ 비전과 목표

### - 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체계

<p><b>계획의 개요</b></p>	<p><b>계획의 배경 및 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의 개요</li> <li>- 계획의 배경 및 목적</li> </ul>	<p><b>서울 도시디자인 개념 및 범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디자인의 정의</li> <li>- 서울 도시디자인 계획의 범위</li> </ul>	
<p><b>여건변화 및 현황</b></p>	<p><b>관련 법 및 조례 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도시디자인 조례 분석</li> <li>- 관련 법령간 위계 정립</li> </ul>	<p><b>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비전 2030 계획 분석</li> <li>- 각 실국 마스터플랜 분석</li> </ul>	<p><b>도시디자인 현황 및 전망 방향성 도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도시디자인 정책 추진</li> <li>- 서울 디자인 추진 성과 분석</li> </ul>
<p><b>비전 및 목표</b></p>	<p><b>서울 도시디자인 비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비전 수립</li> </ul>	<p><b>서울 도시디자인 5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의 방향성 도출</li> </ul>	<p><b>도시디자인 10원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디자인 기본 10원칙 수립</li> </ul>
<p><b>추진전략 수립</b></p>	<p><b>추진전략 수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중장기 단계별 계획 수립</li> </ul>		
<p><b>세부과제 및 선도 프로젝트</b></p>	<p><b>세부과제 및 선도프로젝트(우선과제) 제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도출 선도프로젝트(우선과제) 선정</li> </ul>		
<p><b>실행계획</b></p>	<p><b>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년 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li> </ul>	<p><b>시범사업 추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li> </ul>	<p><b>실행체계 정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관리 및 선도프로젝트 추진 체계 구축</li> </ul>



## - 3차 서울 도시디자인 비전



### ○ 단계별 목표 및 추진전략

- |                               |   |
|-------------------------------|---|
| <p><b>목표1</b></p> <p>추진전략</p> | <p><b>[계획] 통합적 체계 중심의 도시 시설물 사업 기획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기획 과정의 패키지형 관리 시스템</li> </ul>                        |
| <p>추진전략</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디자인 계획 심의 제도 운용</li> <li>- 담당 도시디자인 컨설턴트를 통한 일관된 디자인 관리와 소통</li> </ul>                              |
| <p><b>목표2</b></p> <p>추진전략</p> | <p><b>[전략] 시민 수요 중심의 도시 시설물 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수요 बैं크의 운용을 통한 지속적인 수요 빅데이터 관리</li> </ul>                   |
| <p>추진전략</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시설물의 테스트베드 과정을 통해 수요 적합 기능 관리</li> <li>- 전문적인 시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사용자 관점 내용 적용</li> </ul>               |
| <p><b>목표3</b></p> <p>추진전략</p> | <p><b>[운용] 참여 중심의 도시 시설물 사업 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시 개방형 협의체 구성</li> </ul>                             |
| <p>추진전략</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과정 이후의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참여디자인 피드백 운용</li> <li>- 시민, 전문가, 행정, 학계등 다양한 구성원의 복합형 사업 검토 인력풀 체계 마련</li> </ul> |
| <p><b>목표4</b></p> <p>추진전략</p> | <p><b>[실행] 자치구 중심의 도시 시설물 실행 지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 사업과 가이드라인 중심의 자치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위계 설정</li> </ul>               |
| <p>추진전략</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의 디자인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서울도시디자인 멘토링 시스템</li> <li>-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특화 가이드라인 시스템 운용</li> </ul>             |
| <p><b>목표5</b></p> <p>추진전략</p> | <p><b>[관리] 사용자 중심의 도시 시설물 디자인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과정의 환류 체계를 위한 행정 정책 마련</li> </ul>                         |
| <p>추진전략</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디자인 AS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체계 마련</li> <li>- 지역 특성에 맞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의한 운영 관리 평가관리</li> </ul>             |

#### 4. 공청회 결과(주요내용)

- 일 시 : 2016. 7. 22(금)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의견	검토의견	비고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8월 시행 예정으로 검토	○ 도시디자인 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법 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	반영
○ 시민만족감을 위한 25개 자치구 실행계획 수립	○ 자치구별 가이드라인 운영, 실행 계획 수립 방안을 위한 세부과제 보완	반영
○ 3차 계획의 주요 이슈를 상징화하는 슬로건 개발	○ 3차 계획의 비전을 슬로건 형식으로 보완	반영
○ 서울시, 산하기관 모두 활용가능한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 서울시 통합운용이 가능한 디자인 통합 관리 매뉴얼 개발을 위한 세부과제 보완	반영
○ 시민참여형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시민참여디자인 실행 매뉴얼 개발을 위한 세부과제 보완	반영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작성자 : 도시공간개선반 도시공간정책팀 최태훈 (☎ 2133-7604)